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  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  
전문위원 이금성

#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44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4. 10.
- 회 부 일 : 2026. 4. 10.

## 2. 제안이유

-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30조의2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고
- 기타
  -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: 해당없음(기획예산과-3018)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-3025)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정책과-7536)
- 입법예고(2026. 2. 20. ~ 2026. 3. 12.) : 제출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근거하여, 장애인 가족의 돌봄 소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으로는,
  -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고,
  - 인식개선, 돌봄 및 휴식 지원, 사례 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였음.
  -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‘장애인가족지원센터’를 설치·운영하고 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  - 또한,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‘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’가 심의·자문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.
- 다만,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약 5억 9,22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도비 보조 외에 군비 부담 비율이 70~80%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,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